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6월 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6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12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6년 6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 제안이유

-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7166호, 2004.2.9 공포, 2005.1.1 시행)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18663호, 2004.12.31 제정, 2005.1.1 시행)되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센터의 명칭을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정함.(안 제2조)
-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등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정함.(안 제3조)

- 센터에는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교육실·상담실 및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 확보와 시설을 갖추도록 함.(안 제4조)
- 센터에서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을 두도록 함.(안 제5조)
- 센터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보조 및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
-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수탁관리자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한 지도감독 규정을 정함.(안 제11조)
-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조례가 없으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 법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위임이 되어 제정하려는 것임.
○ 조례 제정 후 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제정되기도 전에 위탁자를 선정 운영하려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시범시로 지정되어 경기도에서 예산이 배정되었고 이에 위탁동의안과 예산안을 승인 받았던 것으로 절차에 의해 위탁기관 선정과 운영하려는 것임.
○ 문화재단에 위탁함에 있어 문화재단내 치료사나 의료기술 있는 자를 공채하도록 재단과 협의한 바가 있는지?	○ 운영지침이나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건강관리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525호
의결 년월일	2006. 6. 16 (제127회)

제출년월일 : 2006. 6. 8

제 출 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7166호, 2004.2.9 공포, 2005.1.1 시행)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18663호, 2004.12.31 제정, 2005.1.1 시행)되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센터의 명칭을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정함.(안 제2조)
- 나.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등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정함.(안 제3조)
- 다. 센터에는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교육실·상담실 및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확보와 시설을 갖추도록 함.(안 제4조)
- 라. 센터에서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을 두도록 함.(안 제5조)

- 마. 센터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보조 및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
- 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아. 수탁관리자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한 지도감독 규정을 정함.(안 제11조)
- 자.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①센터의 명칭은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②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①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제1항의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시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①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②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주민참여) ①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가정복지과
입 안 자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정책팀장	윤애자
	담 당 자	김인경(☎320-2265)